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뮤지컬산업 육성·지원 등 진흥 체계 마련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793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9
나.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13
다. 뮤지컬산업 진흥 시책(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7
라.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23
마. 전담기관 지정(안 제13조)	2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21.

다. 회 부 일 : 2024.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오며 2022년 기준 전체 공연시장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문화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뮤지컬로 최초 제작되는 창작뮤지컬이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공연에서 음원, 영상 및 영화 등 2차적저작물로의 확장 가능성이 방대한 뮤지컬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뮤지컬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 및 뮤지컬 관람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사.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아. 뮤지컬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함(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뮤지컬은 음악, 연기, 안무, 무대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오면서 2000년대 매출액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2023년 기준 전체 공연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공연 산업의 핵심 장르로서 공연시장을 견인해 오고 있음.

[한국 뮤지컬산업의 연매출액 성장 현황]

2000년	2018년	2023년
약 150억원	약 3,000억원	약 4,590억원(70.7%) *전체 공연시장: 6,488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통합전산망)

또한, 최근 국내에서 창작된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뮤지컬이 공연 및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으나, 그동안 뮤지컬은 「문화예술진흥법」¹⁾ 및 「공연법」²⁾에 따라 공연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및 연극의 한 장르로 분류되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뮤지컬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문화예술 분야 장르별 입법 현황]

분야	관련법
문학	「문학진흥법」
미술	「미술진흥법」
음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무용	「공연법」
연극	「공연법」
뮤지컬	「공연법」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연예(演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공연법」
국악	「국악진흥법」
사진	-
건축	-
어문	「국어기본법」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미술	「미술진흥법」
만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에 제정안은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 법률로 정하여, 뮤지컬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뮤지컬 진흥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뮤지컬 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써 뮤지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정의하는 ‘뮤지컬’이 해석상 오페라, 창극, 가무악 등이 포함되어 제정안의 지원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라이선스 뮤지컬 등 뮤지컬의 창·제작 형태를 고려할 때 창작뮤지컬의 정의에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포함하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제정안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라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 1억 1,500만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각 2,5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총 2억 1,500만원(연평균 4,3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90	-	-	-	-	90	18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25	25	25	25	25	125	25
합 계	115	25	25	25	25	215	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재정수반요인	추계여부	비고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안 제5조)	X	실시 중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6조)	X	
지식재산권의 보호(안 제7조)	X	
창작뮤지컬의 수출 등 지원(안 제8조)	X	
뮤지컬 관련 행사 등의 지원(안 제9조)	X	
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안 제10조)	X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안 제11조)	X	
뮤지컬진흥위원회(안 제12조)	○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3조)	X	추계곤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본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8조(창작뮤지컬의 수출 등 지원) 제9조(뮤지컬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제10조(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 제11조(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12조(뮤지컬진흥위원회) 제13조(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시행일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조는 뮤지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뮤지컬’, ‘뮤지컬산업’, ‘창작뮤지컬’과 같이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뮤지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 및 콘텐츠 문화강국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뮤지컬”이란 음악, 대본, 연기, 안무 등의 예술적 요소가 조명, 음향, 영상 등의 무대기술과 결합되어 극 양식으로 전개되는 공연을 말한다.
2. “뮤지컬산업”이란 뮤지컬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소비, 수입, 수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창작뮤지컬”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하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뮤지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뮤지컬을 말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안의 목적과 제정안의 핵심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앞서 개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중 개별법으로 제정된 「미술진흥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학진흥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제정안에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제정안은 ‘뮤지컬’을 ‘음악, 대본, 연기, 안무 등의 예술적 요소가 조명, 음향, 영상 등의 무대기술과 결합되어 극 양식으로 전개되는 공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뮤지컬 공연뿐 아니라 오페라, 창극, 가무극 등 타 장르까지 해당 제정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바, ‘뮤지컬’의 법적 정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뮤지컬'에 대한 시중 정의]

출처	내용
표준국어대사전	미국에서 발달한 현대 음악극의 한 한 형식, 음악·노래·무용을 결합한 것으로, 뮤지컬 코미디나 뮤지컬 플레이를 종합하고, 그 위에 레뷔(revue)·쇼(show)·스펙터클(spectacle) 따위의 요소를 가미하여, 큰 무대에서 상연하는 종합무대예술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

둘째, 안 제2조제3항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제작하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뮤지컬을 ‘창작뮤지컬’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국애니메이션’³⁾,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영화’⁴⁾의 입법례와 같이, 국내 제작사가 창작·제작한 뮤지컬을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본, 안무, 음악, 무대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공연되는 뮤지컬의 특성상 해당 요소별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해외에서 공연된 뮤지컬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현지화하는 논레플리카(Non-Replica) 방식의 라이선스 뮤지컬⁵⁾은 해외 원작의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작뮤지컬’의 정의에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를 포함하는 것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창작뮤지컬을 정의할 때 작품을 예술적으로 창작한 것을 중심 개념으로 둘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제작하

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5) 해외 뮤지컬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공연하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경우, 원작의 대본, 안무, 음악, 무대, 의상, 연출 동선 등 작품을 원형 그대로 무대에 올리는 레플리카(replica) 방식과 원작 일부의 수정 및 각색을 통한 현지화를 허용하는 논레플리카(non-replica) 방식으로 구분됨.

는 뮤지컬’ 대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창작하는 뮤지컬’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조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의로는 오페라, 창극, 가무악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포괄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창작뮤지컬의 경우 향후 투자·유통구조의 변화로 한국 제작사가 창작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를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나.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뮤지컬진흥위원회의 의견조치, 실태조사 및 기관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4조(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뮤지컬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뮤지컬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뮤지컬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뮤지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창작뮤지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뮤지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뮤지컬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뮤지컬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뮤지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

12조에 따른 뮤지컬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뮤지컬산업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4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뮤지컬산업의 진흥의 기본방향 및 법령·제도 개선 등 정책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뮤지컬산업 정책 수립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문학진흥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한편, 안 제4조제4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뮤지컬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는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경우 종합계획 수립 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12조의 뮤지컬진흥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상설로 운영될 경우에는 종합계획 수립 시 자문을 듣도록 강행 규정으로 하고, 뮤지컬진흥위원회의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비상설로 운영될 경우 자문도 재량규정으로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학진흥법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뮤지컬산업 진흥 시책(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작뮤지컬의 수출 등 지원, 뮤지컬 관련 행사·축제 및 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 뮤지컬산업 전반에 걸친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5조(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 ① 정부는 뮤지컬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에 기여하는 뮤지컬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뮤지컬 관련 단체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뮤지컬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창작뮤지컬의 수출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공연권 판매 및 해외 공연 등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연장 제공,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뮤지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뮤지컬 관련 행사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뮤지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행사 또는 축

제를 기획·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 및 뮤지컬 관람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연장의 설치·운영, 뮤지컬 배급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기반 창작뮤지컬의 진흥을 위하여 창작뮤지컬 관련 사업자, 종사자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2) 검토의견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6)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 「공연법」 7)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6)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지급하고 공연장 설치·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및 공연산업과 공연예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창작뮤지컬 수출 등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뮤지컬산업을 위한 각종 사업들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을 근거로 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정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뮤지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뮤지컬 장르 대상 공모·지정 사업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22년	'23년	'24년	수행기관 (공모/지정)	재원
전문 인력 양성	창작뮤지컬아카데미	393	393	393	한예종 산학협력단 (지정)	문예기금
	DIMF 뮤지컬아카데미	349	349	349	(사)대구뮤지컬페스티벌 (지정)	문예기금
	뮤지컬전문인력 양성	1,000	1,000	1,00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일반회계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현지화 및 진출 지원	1,000	1,000	1,30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일반회계
	K-뮤지컬 국제마켓 개최	700	700	1,000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정)	일반회계
행사 지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DIMF)	650	650	400	(사)대구뮤지컬페스티벌 (지정)	일반회계 (국비기준)
기반 조성	뮤지컬컴플렉스 조성 기본연구	-	160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24년 이월)
합계		4,092	4,252	4,4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안 제10조의 “뮤지컬 배급 환경 개선”에서 ‘배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유통과 관련된 용어로, 실제 뮤지컬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뮤지컬 유통 환경”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2조는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표]

제정안
제12조(뮤지컬진흥위원회) ①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뮤지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뮤지컬산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뮤지컬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연예술 및 뮤지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 연령, 분야 및 전문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2조는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재 뮤지컬산업을 포함하여 공연 장르 전반에 걸쳐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고려할 때, 뮤지컬산업 진흥 정책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⁸⁾에서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지양하고 유사 위원회를 연계·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설치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⁹⁾에서 자문 기능을 수행하거나 분과위원회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션, 대중음악, 영화 등 대중예술을 주로 다루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자문 영역과 뮤지컬산업은 그 성격이 상이하고, 뮤지컬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뮤지컬진흥위원회를 통한 자문 기능이 필요하므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뮤지컬진흥위원회를 필요 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 전담기관 지정(안 제13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3조는 뮤지컬산업 진흥·발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표]

제정안
제13조(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뮤지컬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이하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뮤지컬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연수 지원 4. 뮤지컬의 제작·유통 활성화 5.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지원 6. 뮤지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7. 뮤지컬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8. 뮤지컬 관련 행사·축제 등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안 제13조는 뮤지컬산업 진흥 및 발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기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뮤지컬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임.

다만,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해당 조문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
국악진흥법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진흥법	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기획·전시, 유통·감정, 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미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79